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2021년도 임금·단체협약서(2021. 10. 21.)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서(2022. 10. 7.)
별 도 협 약 서	별 도 협 약 서
<p>제5조(동의 간주) 2021년도 임금단체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신설 및 개정된 조항과 관련한 우리 사 규정 및 인사관리지침 개정에 대해서는 교섭대표조합은 동의하며,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1.10.21.)</p> <p>제14조(2021년도 산별중앙교섭 적용) 적십자사는 2021년도 산별중앙교섭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관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21.)</p>	<p>제5조(동의 간주)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신설 및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 우리 사 규정 및 지침 개정에 대해 교섭대표조합은 동의하며, 동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22.10.07.)</p> <p>제14조(2021년도 산별중앙교섭 적용) 적십자사는 2021년도 산별중앙교섭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관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0.21.)</p> <p>제14조의2(2022년도 산별중앙교섭 적용) 적십자사는 2022년도 산별중앙교섭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관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07.)</p> <p>제17조(핸드폰 지원비) 간호팀 근무편성 담당직원, 품질관리팀 간호·보건행정 업무 담당직원, 권역 및 혈액원 수급 담당직원에게 핸드폰 지원비를 월 30,000원 지급한다.(본조신설 2022.10.07.)</p>
<신설>	

2020년도 임금·단체협약서(2020. 11. 30.)	2021년도 임금·단체협약서(2021. 10. 21.)																				
<신설>	<p>제18조(당직근무자 조식비) 야간 당직근무자 조식비를 1야당 7,000원 지급한다.</p> <p>○ 지급대상: 야간 당직근무자(혈액원 및 공급소, 혈장분획센터) (본조신설 2022.10.07.)</p>																				
<p style="text-align: center;">임금협약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직원 및 고용원</p> <p>제1조(기본급) 기본급(봉급)은 모든 직종 및 직급에 대해 2020년도 임금총액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봉급)으로 환산하여 정률로 인상한다.(개정 2021.10.21.)</p> <p>제5조(수당 등) ①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7.11. 2.)</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padding-left: 20px;">5년 이상~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10년 이상~1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7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15년 이상~2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9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20년 이상~2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2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right;">140,000원</td> </tr> </table> <p>②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p>	5년 이상~10년 미만	6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7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90,000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20,000원	25년 이상	140,000원	<p style="text-align: center;">임금협약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직원 및 고용원</p> <p>제1조(기본급) 기본급(봉급)은 모든 직종 및 직급에 대해 2021년도 임금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급(봉급)으로 환산하여 정액으로 인상한다.(개정 2022.10.07.)</p> <p>제5조(수당 등) ①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7.11. 2.)</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padding-left: 20px;">5년 이상~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6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10년 이상~1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7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15년 이상~2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9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20년 이상~2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right;">120,000원</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2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right;">140,000원</td> </tr> </table> <p>②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p>	5년 이상~10년 미만	6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7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90,000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20,000원	25년 이상	140,000원
5년 이상~10년 미만	6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7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90,000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20,000원																				
25년 이상	140,000원																				
5년 이상~10년 미만	6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	70,000원																				
15년 이상~20년 미만	90,000원																				
20년 이상~25년 미만	120,000원																				
25년 이상	140,000원																				

다. 기타 지급연령 및 지급기준 등은 '직원보수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1. 2.)

1. 배우자 40,000원
2.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20,000원
3. 첫째 자녀 20,000원(개정 2017.11. 2.)
4. 둘째 자녀 60,000원(개정 2017.11. 2.)
5. 셋째 자녀 이후 100,000원(개정 2017.11. 2.)

③ (업무수당) 업무수당은 직원보수운영규정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호의2]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8.12.19.)

업무구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의 무 (혈액관리본부 및 본부소속기 관)	1. 기본수당 의사	480,000
	2. 가산수당 가. 혈액관리본부장, 혈액원장(또는 부원장), 혈장분획센터 원장, 혈액수혈연구원장, 혈액검사센터원장, 의료원장	460,000
	나. 연구관리부장, 검사관리부장	360,000
	다. 혈액관리본부 팀장: 전문의사 혈액관리본부 팀장: 일반의사	360,000 288,000
	라.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 부(팀)장: 전문 의사	288,000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 부(팀)장: 일반 의사	216,000
	마. 기 타 : 전문의사	216,000
	기 타 : 일반의사	180,000

다. 기타 지급연령 및 지급기준 등은 '직원보수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11. 2.)

1. 배우자 40,000원
2.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20,000원
3. 첫째 자녀 20,000원(개정 2017.11. 2.)
4. 둘째 자녀 60,000원(개정 2017.11. 2.)
5. 셋째 자녀 이후 100,000원(개정 2017.11. 2.)

③ (업무수당) 업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2.10.07.)

업무구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의 무 (혈액관리본부 및 본부소속기 관)	1. 기본수당 의사	480,000
	2. 가산수당 가. 혈액관리본부장, 혈액원장(또는 부원장), 혈장분획센터 원장, 혈액수혈연구원장, 혈액검사센터원장, 의료원장	460,000
	나. 연구관리부장, 검사관리부장	360,000
	다. 혈액관리본부 팀장: 전문의사 혈액관리본부 팀장: 일반의사	360,000 288,000
	라.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 부(팀)장: 전문 의사	288,000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 부(팀)장: 일반 의사	216,000
	마. 기 타 : 전문의사	216,000
	기 타 : 일반의사	180,000

보건 (병원, 인재개발원, 혈액관리본부 및 본부소속기관)	1.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환경기사	
	가. 2급 보직자	150,000
	나. 3급이하 보직자	140,000
	다. 2급 비보직자	90,000
	라. 3급이하 비보직자	80,000
연구 (혈액관리본부 및 본부소속기관)	1. 연구직	
	가. 부장급연구원	240,000
	나. 팀장급연구원	190,000
	다. 선임연구원	100,000
	라. 연구원	80,000
관리	1. 행정·사업·교무	
	가. 본사 부서장, 혈액관리본부 본부장 및 실·국장, 지사 사무처장, 인재개발원장,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장 및 부원장, 1급 교수부장 및 교수, 의료원 부서장, 병원 관리부원장,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장	310,000
	나. 2급이상 보직자(교수, 비서실장 포함)	150,000
	다. 3~4급 보직자(교수, 비서실장, 전임경영관리위원 포함)	140,000
	라. 2급이상 비보직자	90,000
마. 3급이하 비보직자	80,000	
전산	전산업무수당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단, 실·국장급 보직자는 220,000원을, 팀장급 보직자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보건 (병원, 인재개발원, 혈액관리본부 및 본부소속기관)	1.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환경기사	
	가. 2급 보직자	150,000
	나. 3급이하 보직자	140,000
	다. 2급 비보직자	90,000
	라. 3급이하 비보직자	80,000
연구 (혈액관리본부 및 본부소속기관)	1. 연구직	
	가. 부장급연구원	240,000
	나. 팀장급연구원	190,000
	다. 선임연구원	100,000
	라. 연구원	80,000
관리	1. 행정·사업·교무	
	가. 본사 부서장, 혈액관리본부 본부장 및 실·국장, 지사 사무처장, 인재개발원장,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장 및 부원장, 1급 교수부장 및 교수, 의료원 부서장, 병원 관리부원장,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장	310,000
	나. 2급이상 보직자(교수, 비서실장 포함)	150,000
	다. 3~4급 보직자(교수, 비서실장, 전임경영관리위원 포함)	140,000
	라. 2급이상 비보직자	90,000
마. 3급이하 비보직자	80,000	
전산	전산업무수당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단, 실·국장급 보직자는 220,000원을, 팀장급 보직자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혈액수혈연구원의 연구관리부장은 의사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부장급에 해당하는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①혈액수혈연구원의 연구관리부장은 의사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부장급에 해당하는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②본사, 본부, 의료원 직원에 대하여 업무수당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직원 및 고용원 정원운영규정 [별표 제1호] 책임보직기준표에 해당하는 직원, 단순노무 업무종사자 및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직원은 예외로 한다.

④ (위험수당) 위험수당은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0.11.30.)

지 급 대 상	지급한도 액(원)
1. 본·지사 ○ 기관실, 전기실 근무자	20,000
2. 병원 ○ 결핵과, 정신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및 임상병리과 근무의사	40,000
○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정신과 병동, 영상의학과(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약제·조제과(실), 중앙공급실, 주사처치실 및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근무자, 건강검진실(과), 외래 및 병동근무자,응급차량 운전기사, 장례지도사, ○ 기관실, 전기실, 특수세탁 종사자, 환경기사 ○ 영양사, 조리원, 취사원 ○ 원무팀 진료비 접수·수납담당자 ※ 원무팀 진료비 접수·수납담당는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에 한한다.	20,000
3. 혈액원 ○ 의 사	40,000
○ 연구원	20,000
○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헌혈차량 운전기사,	20,000

④ (위험수당) 위험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2.10.07.)

지 급 대 상	지급한도 액(원)
1. 본·지사 ○ 기관실, 전기실 근무자	20,000
2. 병원 ○ 결핵과, 정신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및 임상병리과 근무의사	40,000
○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회복실, 정신과 병동, 영상의학과(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약제·조제과(실), 중앙공급실, 주사처치실 및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근무자, 건강검진실(과), 외래 및 병동근무자, QPS 실, 감염관리실, 공공의료협력(사업)팀, 진료협력실, 간호팀, 교육센터, 사회사업실, 응급차량 운전기사, 장례지도사, 안전·보건관리자 ○ 기관실, 전기실, 특수세탁 종사자, 환경기사 ○ 영양사, 조리원, 취사원 ○ 원무팀 진료비 접수·수납 업무 종사자 ※ 원무팀 진료비 접수·수납 업무 종사자 는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에 한한다.	20,000
3. 혈액원 ○ 의 사	40,000
○ 연구원	20,000
○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헌혈차량 운전기사,	20,000

공급차량 운전기사, 헌혈안내원 ○ 기관실, 전기실 근무자	20,000
------------------------------------	--------

- ⑤ (기술직 주임 수당) 기술직 주임수당은 매월 2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06. 1.13.)
- ⑥ (학비보조비) 자녀 학비보조비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조합원의 경우 지침에 따라 자녀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 6.28.)
- ⑦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8.12.19.)

대 상	월 지급액
1급, 별정직	140,000
2급, 연구직(부장급 연구원)	130,000
3급, 연구직(팀(과)장급 연구원)	120,000
4급, 연구직(선임연구원), 기술직 및 기능직 15년 이상	110,000
5급, 연구직(연구원), 기술직 및 기능직 10년 이상	100,000
6급, 기술직 및 기능직 10년 미만	90,000
7급, 기술직 및 기능직 5년 미만	85,000
고 용 원	80,000
의무직 팀(과)장급 이상	140,000
의무직 부과장·혈액원 제조관리부장 및 기타 의사	115,000

- ⑧ (연가보상비) 전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매년 1월 15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 1.13.)
- ⑨ (교통보조비 지급) <삭제 2018.12.19.>

공급차량 운전기사, 헌혈안내원 ○ 기관실, 전기실 근무자	20,000
------------------------------------	--------

- ⑤ (기술직 주임 수당) 기술직 주임수당은 매월 2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06. 1.13.)
- ⑥ (학비보조비) 자녀 학비보조비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조합원의 경우 지침에 따라 자녀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 6.28.)
- ⑦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8.12.19.)

대 상	월 지급액
1급, 별정직	140,000
2급, 연구직(부장급 연구원)	130,000
3급, 연구직(팀(과)장급 연구원)	120,000
4급, 연구직(선임연구원), 기술직 및 기능직 15년 이상	110,000
5급, 연구직(연구원), 기술직 및 기능직 10년 이상	100,000
6급, 기술직 및 기능직 10년 미만	90,000
7급, 기술직 및 기능직 5년 미만	85,000
고 용 원	80,000
의무직 팀(과)장급 이상	140,000
의무직 부과장·혈액원 제조관리부장 및 기타 의사	115,000

- ⑧ (연가보상비) 전년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매년 1월 15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 1.13.)
- ⑨ (교통보조비 지급) <삭제 2018.12.19.>
- ⑩ (직책보조비) 직원 및 고용원 정원운영규정 [별표 제1호] 책임보직기준표에 해당하는 직원이 직원운영규정 제26

	<p>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 1~4급 비보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직책보조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10. 7.)</p>
<p>부 칙</p>	<p>부 칙</p>
<p>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① 다만, 제14조(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p>	<p>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① 다만, 제5조(수당 등)의 업무수당, 위험수당, 직책보조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한다.</p>